

예 산 총 칙

2011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52,189,845	13,565,695
일반회계	434,624,842	13,038,745
특별회계	17,565,003	526,950
기타특별회계	17,565,003	526,950
하수도사업 특별회계(2011년)	3,594,310	107,829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2,015,686	60,471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1,269	38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1,970,573	59,117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7,565,068	226,952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2,418,097	72,543

제 2 조 세입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1년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없음" 으로 한다.

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없음" 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540,58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